예 산 총 칙

202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037,073,728	61,112,212
일반회계	1,822,406,877	54,672,206
특별회계	214,666,851	6,440,006
공기업특별회계	177,727,533	5,331,82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3,970,107	2,519,10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3,757,426	2,812,723
기타특별회계	36,939,318	1,108,180
주택사업특별회계	98,000	2,940
수질개선특별회계	3,260,118	97,80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046,216	331,386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704,000	21,12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480,592	104,418
교통사업특별회계	18,320,392	549,612
대지보상특별회계	30,000	900

제 2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사업은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으로 한다.

제 6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8,402,939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액은 『50,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